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채권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제출항목 개정 등)
나.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회원조사 현장조사 시 현장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다.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에 관한 조항 삭제 등)
라. 신용거래약관 (담보증권의 권리 행사 요건 추가)
마.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투자권유 위탁계약 체결 시 포함사항 추가 등)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1/9/2 개정 · 2021/9/15 시행)

1) 개정 이유

□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3년물 신규 발행에 따른 수익률 공시대상채권 추가와 발행기관이 변경된 특수채의 종류명 변경 및 개별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제출항목에 해당하는 공사 · 공단채 중 일부를 제출항목에서 제외 또는 발행자를 변경하기 위함

— 신규 발행종목인 통안증권 3년물의 경우 시장에 정착되기 전으로, 거래실적으로 산출되는 장외거래 대표수익률 공시대상채권과 평가기관에서 제출하는 채권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제출항목에 추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3년물 신규발행
: 한국은행이 유동성조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 도입(2021.9 최초 발행)

발행기관이 변경된 특수채
: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한 '토지개발채권'이 공시대상채권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변경되면서 '토지주택채권'을 발행하고 있어 '토지주택채권'으로 종류명 변경

① 제출항목에서 제외
- (정부보증) 예금보험기금
  : 외환위기때 금융권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져 최근 정부보증 예금보험기금은 모두 상환 완료됨
- 한국정책금융공사
  : 2009년에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을 분리·신설하였다가 산업은행에 재흡수됨
- 대한석탄공사: 기 발행된 모든 채권이 만기되어 유통되는 채권이 없음

② 발행자 변경
- 한국철도시설공단: 관련법률 개정으로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 변경
- 중소기업진흥공단: 관련법률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명칭 변경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2) 주요 내용

□ 수익률 공시대상채권(제50조)

— '장외거래 대표수익률' 및 '종류별·잔존기간별 가중평균수익률' 공시대상채권에 '통화안정증권(3년)' 추가 및 '토지개발채권'을 '토지주택채권'으로 변경

- 제50조 제1호('장외거래 대표수익률' 공시대상채권) 및 제2호('종류별·잔존기간별 가중평균수익률' 공시대상채권) 개정

□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개정(별제 제44호)

— 채권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제출항목에 통화안정증권 2년6월, 3년물 추가, 개별 공사·공단채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제출항목 중

- (기존) 발행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 → (개정) 각 '국가철도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
- 발행자가 '예금보험기금', '한국정책금융공사', '대한석탄공사'인 공사 · 공단채 삭제

나.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1/9/17 개정 · 2021/9/23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조사 업무를 재개한 후 회원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처리 과정에서 업무 처리절차 개선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하기 위함

— 2015년 이후 회원사 지원기능 강호 및 회원사 수검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미실시, 2020년부터 재실시

— 전문사모운용사 대상 내부통제 · 위험관리, 운용사 · 증권사 대체투자 위험관리, 인수업무 적정성 점검 등

2) 주요 내용

□ 회원조사 현장조사시 현장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1조 제4항)

— (대상) 위법 · 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경미한 경우

— (현장권고) 본점 또는 지점의 장 등에게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권고

- 금융감독원 검사 및 한국거래소 회원감리시 현지 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有

□ 조사결과, 경미한 사항 및 회원 임직원의 착오 · 미숙지 등에 따른 단순 위규행위에 대한 처리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 명확화

— (조사결과의 처리) 경미한 사항 및 단순 위규행위에 대해 회원이 자체 개선토록 권고(제14조 제1항 단서)

— (사후관리) 자체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확인(제15조 제2항)

□ 자료제출 요구 등(제9조 제1항)

— 조사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해 출석 · 진술을 요구

다.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2021/9/24 개정 · 2021/9/25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021.9.25.)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에 관한 조항 삭제(제29조)

— (기존) 지배구조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를 마련 · 운영하도록 규정

—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지배구조 법령상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마련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관련 내용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금소법 시행전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금소법 시행후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2) •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 투자광고의 방법 · 절차에 관한 조항 정비(제46조)

— 투자광고 관련 자본시장법(제57조) 및 금융투자업규정(제4-12조) 조항이 삭제되고 관련 내용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표준내부통제기준 인용 법령 수정

라. 신용거래약관 (2021/9/30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는 개인공매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대주 주식대여물량 추가확보 및 대주재원 활용 효율화를 추진 금융위 보도자료, 2021.6.4., 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5.3일~6.2일) 주식시장 동향 점검

— 인대주물량은 증권금융회사의 주식대여풀에 연동되는데, 고객의 유통금융매수증권은 고객이 이를 제3자에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주로써 활용이 가능한바,

• 유통금융매수증권은 금융투자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신용융자를 행하여 고객이 매수한 증권을 의미하며, 이는 금융투자회사가 증권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함

— 이러한 고객의 동의 과정에서 제3자에게 대여된 매수증권의 권리 행사 요건을 명시하여 투자자 오인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담보증권의 권리 행사 요건을 추가(별지 제4조 제4항)

— 고객이 금융투자회사가 증권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유통융자매수증권 활용에 동의하여 증권금융회사가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 별도의 개별합의가 없는 한 고객의 권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상법 제337조)

— 고객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기준일 5영업일 전 담보 활용에 대한 동의 의사를 철회할 경우 그에 대한 행사가 가능함을 약관에 명시적으로 기재

마.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2021/9/16 개정 · 2021/9/25 시행)

1) 개정 이유

□ 본회에서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2021.7.30)하면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기준'을 포함함에 따라,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

— 위탁계약 체결 시 포함사항, 관리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

2) 주요 내용

□ '투자권유 위탁계약' 체결 시 포함사항 추가(제4조)

—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위탁계약 체결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 반영

- ① 계약기간 및 갱신, 계약해지사유, ② 사고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수수료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④ 금지행위, ⑤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수수료 감액, 벌점 부과, 계약해지 등 불이익에 관한 사항, ⑥ 재판관할 등 기타 필요사항

□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및 위탁계약 이행상황 관리 · 감독에 관한 사항 반영(제15조)

—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기준 마련 시 포함사항 반영

- ① 위탁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절차, ② 영업행위 점검 절차 및 보고체계, ③ 투자자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④ 위탁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⑤ 실적 등에 관한 기록관리, ⑥ 수수료 산정 및 지급 기준, ⑦ 교육프로그램,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⑧ 회사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